

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재 명 

2026년 4월 9일

국 무 총 리 김 민 석

국 무 위 원
고 용 노 동 부 김 영 훈
장 관

국 무 위 원
행 정 안 전 부 윤 호 중
장 관
(인사혁신처 소관)

● 법률 제21543호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노동절(5월 1일)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노동절(5월 1일)은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로 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,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할 수 있고, 민간기업의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,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